

[]징계처분
[]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
[]징계부가금 감면처분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소속	직위(직급)	성명
주문	징계 종류,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	
이유	불임의 징계 의결서,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(징계처분등 전에 「공무원 징계령」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합니다) 사본과 같음	

「공무원 징계령」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처분권자(처분제청권자)

직인

불임: 징계 의결서, 징계부가금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(징계처분등 전에 「공무원 징계령」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합니다)의 사본

유의사항

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6조제1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